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박 지 현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「물환경보전법」 제6조에 따라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, 이를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수질 및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하천보전 관리방안은 하천의 수생태적 기능 향상과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, 하천주변을 둘러싼 수변림, 습지, 초지 등 치수

및 이수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,

충청북도 내 각 하천의 수질보전활동은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생태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.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하천에 대하여 「물환경보전법」 제6조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수질 및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.

참 고

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8개 시·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

시·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
제정일	23.3.27	15.2.25	19.10.30	-	-	17.12.29	-	-
시·도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제정일	16.7.19	-	20.8.10	-	17.7.6	22.9.23	-	-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, 이를 복원하기 위한 도민의 자발적인 환경오염 감시행위와 하천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음.

참 고

- 「물환경보전법」 제6조(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)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- **조례제정 타시·도 현황** : 강 또는 하천살리기 운동을 범시민 단체 주도 하에 관련사업 진행

-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,

- 안 제3조는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적극

노력하고 협력해야 하는 도지사 및 충청도민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안 제4조는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5조는 도민이나 민간단체에 하천수질보전활동, 하천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등 관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6조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.

○ 그 밖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○ 조례안 예고('23. 6. 2. ~ 6. 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본 조례안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,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, 이를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○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.

6. 검토의견

○ 「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충청북도 내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, 이를 복원하기 위한 도민의 자발적인 환경오염 행위감시와 하천보전 활동을 지원하여 도민의 수질보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 조례제정 이후 수질보전활동에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환경 오염 방지와 감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루어져 하천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지사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